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소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7 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이소영·강훈식·김한규

김성환 · 김원이 · 이재관

정동영 • 민홍철 • 김용만

홍기원 • 복기왕 • 박지혜

권칠승·임미애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,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,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.

이에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

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,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3조 및 제23조의2).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"신문·잡지·방송·컴퓨터통신 등의"를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"대한변호사협회가"를 "대통령령으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의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
- 2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 신문 및 일반주간신문,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
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[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을 포함한다]
- 4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
- 5. 그 밖에 전광판, 벽보 등 매체의 성질,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
- ③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는 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기준이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광고심사위원회에 심사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광고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한다.
- ⑤ 광고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은 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의2(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광고심사위원회) ① 변호사등의 광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.
 - ② 광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광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.
 - 1. 제7조제1항에 따라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
 - 2.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 는 사람

- 3. 그 밖에 표시·광고의 공정화 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
-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행 아 혀 개 정 제23조(광고) ① 변호사·법무법 제23조(광고) ① ----인 · 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 조합(이하 이 조에서 "변호사 등"이라 한다)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, 경력, 주요 취 급 업무, 업무 실적,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을 신문·잡지·방송·컴퓨터 ---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 고할 수 있다. 1.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의 <신 설>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 디오방송 2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 간신문, 같은 조 제2호의 인 터넷신문 및 「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 넷 매체[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(A pplication)을 포함한다]

-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~ 6. (생략)
- 7.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(受任) 질서를 해 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<u>대</u> 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
-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 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 원회를 둔다.
-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다.

4. '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 <u>2</u>
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
5. 그 밖에 전광판, 벽보 등 매
체의 성질, 영향력 등을 고려
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광고매체
②
1. ~ 6. (현행과 같음)
7
<u>대통령령</u>
<u>으로</u>
③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대
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
는 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
심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
심사 기준이 이 법 및 관계 법
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광고
심사위원회에 심사 기준의 개
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광고
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

<신 설>

<신 설>

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광고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은 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제23조의2(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광고심사위원회) ① 변호사등의 광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.

- ② 광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광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.
- 1. 제7조제1항에 따라 제78조

- 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
- 2.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조제3 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이 추천하는 사람
- 3. 그 밖에 표시·광고의 공정
 화 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의 장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(5)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

정한다.